

이 사 회 규 정

제정 : 2019. 05. 02.

개정 : 2025. 02. 19.

전문개정 : 2025. 08. 07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엘에스티라유텍 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) ① 이사회는 제13조가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4조(이사회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2장 구 성

제5조(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 구성원은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.

제6조(의장)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②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7조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의장은 이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
제7조(감사의 출석)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

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회 의

제9조(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한다. 단, 전 분기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.

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10조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,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(소집절차)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결의방법)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부의안건) ① 이사회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
②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

1.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
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, 공동대표의 결정 (상법 제389조 1항, 2항)

(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(상법 제393조 1항)

(3) 지점의 설치·이전·폐지 (상법 제393조 1항)

- (4)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 및 위원의 선임·해임 (상법 제393조의2 제2항 3호)
- (5)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(상법 제393조의2 제4항)
- (6) 주주총회의 소집 (상법 제362조)
- (6)-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 (상법 제368조의4)
- (7) 영업보고서의 승인 (상법 제447조의2 제1항)
- (8)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 (상법 제447조)
- (9)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(상법 제390조 제1항 단서)
- (10)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(상법 제397조)
- (11)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(상법 제398조)
- (11)-2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(상법 제397조의2)
- (11)-3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내부거래(독점거래법 제26조)
- (12) 신주의 발행 (상법 제416조)
- (12)-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(상법 제469조)
- (13)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(상법 제461조 제1항)
- (14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(상법 제513조 2항, 제516조의2 제2항)
- (15)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 (상법 제416조)
- (15)-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(상법 제341조, 제342조,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)
- (15)-3 자기주식의 소각 (상법 제343조)
- (16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(상법 제340조의3 제1항 5호)
- (17) 중간배당의 결정 (상법 제462조의3)
- (18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(상법 제526조 3항, 제527조의 4항)
- (19) 간이주식교환, 소규모 주식교환, 간이합병,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 분할합병 (상법 제360조의9, 제360조의10, 제527조의2, 제527조의3, 제530조의11 제2항)
- (19)-2 간이영업양도·양수·임대 등 (상법 제374조의3)
- (21) 일반공모증자의 결정 (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, 표준정관 제10조)
- (22)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 (표준정관 제15조)
- (23)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(표준정관 제17조)
- (24)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(표준정관 제20조)
- (25) 교환사채의 발행 (표준정관 제21조)
- (26)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및 업무분장 (표준정관 제39조)
- (27)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(표준정관 제46조)

2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가.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

- (1) 정관 변경 (상법 제433조)
- (2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(상법 제374조)
- (3)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(상법 제374조)
- (4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·변경 또는 해약 (상법 제374조)
- (5) 이사·감사의 해임 (상법 제385조, 상법 제415조) (개정 2016.12.29)

- (6) 자본금의 감소 (상법 제438조) (개정 2016.12.29)
- (7) 회사의 해산, 회사의 계속 (상법 제518조, 상법 제519조)
- (8) 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(상법 제522조, 상법 제530조의3)
- (9) 사후설립 (상법 제375조)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(상법 제417조)
- (11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(상법 제340조의2)
- (12)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 (상법 제360조의3, 제360조의15)
- (13) 주식의 분할 (상법 제329조의2)

나. 보통결의 사항

- (1) 이사, 감사의 선임 (상법 제382조, 상법 제409조)
- (2) 이사, 감사의 보수의 결정 (상법 제388조, 상법 제415조)
- (3) 재무제표의 승인 (상법 제449조) (개정 2016.12.29)
- (4) 현금·현물·주식배당의 결정 (상법 제462조, 제462조의2)
- (4)-2 준비금의 감소 (상법 제461조의2)

다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(신설 2016.12.29)

3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
- (1) 공장, 사무소, 사업장 등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2) 중요한 자산의 취득·처분 및 양수·양도(공시 기준상 자산의 10% 이상)
- (3) 중요한 자산의 담보제공(공시 기준상 자산의 10%)
- (4)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, 해제·해지(공시 기준상 매출의 10% 이상)
- (5) 대규모 자산의 차입(공시 기준상 자산의 10%)
- (6)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
- (7) 기업정보공시 및 내부통제의 감독
- (8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(9)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- (10)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,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, 관계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

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
- 2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3.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
- 4.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
- 5.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
- 6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

제14조(권한의 위임)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)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

다.

제4장 기 타

제16조(의사록)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7조(부속실 등)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2019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2025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) ① 이 규정은 202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